

(재)신안군장학재단 공고 제2024 - 4호

2024년도 하반기新安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

2024년 하반기新安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10. 10.

(재)신안군장학재단이사장(직인)



1. 선발 예정인원 : 00명(389,400천원)

(단위 : 명, 천원)

| 분야 | 구분 | 지원대상 (선발기준) | 추천권자 | 인원 | |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
| | | | | 인원 | 금액 | 비고 | |
| 합계 | | | | | 389,400 | | |
| 성적 우수 | 우수 장학금 | 대학생 (성적평가 100%) | 재단 | 00 | 150,000 | | |
| | 내고장 학교 진학 장학금 | 중/고등학생 (성적평가 100%) | 학교장 | 36 | 20,400 | | |
| 교육 복지 | 일반 장학금 | 초/중/고/대학생 (소득평가 100%) | 재단 | 초등 | 15 | 34,000 | 생활비 |
| | | | | 중등 | 15 | | |
| | | | | 고등 | 10 | | |
| | | | | 대학 | 10 | | |
| | 대학생활비지원금 (신설) | 대학생 (성적평가 100%) | 재단 | 00 | 150,000 | 생활비 | |
| | 만학도 장학금 | 초/중/고등학생 (출석률) | 학교장 | 15 | 7,500 | | |
| | 다문화 가정 장학금 | 초/중/고/대학생 (소득 100%) | 재단 | 00 | 8,000 | | |
| 나도 학생 장학금 | 초/중/고 (소득 100%) | 재단 | 15 | 7,500 | | | |
| 위기 가정 지원금 | 초/중/고/대학생 | 재단 | 00 | 5,000 | 생활비 | | |
| 자정기부 | 어가및저소득 자녀 장학금 | 고등학생 | 학교장 | 10 | 7,000 | | |

※신청 인원 및 중복지원에 따른 감액 등 사정에 따라 재단이사회 심의를 통해 일부 변동 될 수 있음.

○ 재원 : 기본재산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기부금수입

2.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

가. 기본자격

- 부 또는 모(친권자)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·중·고등학생
- 부 또는 모(친권자)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은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
-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
- ※ 초·중·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(단, 만학도장학생은 제외)

나. 지원 제외

- 국가장학금(한국장학재단), 정부, 지자체, 대학,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(단, 생활비지원금은 예외)
-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·해군·공군사관학교, 국방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, 경찰대학, 육군3사관학교 등
-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(원격대학), 사내대학
-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
- 정규 학제 기간(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)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
-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, 대학원생
-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

※ 장학금 지원은 연 1회(상·하반기 중 1회 선발)로 제한(단, 대학생은 예외)

하며 장학금 이증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

*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

[한국장학재단]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안내

-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방지 대상에는 장학금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도 포함
 - ※ 근로장학금, 생활비 대출 등 등록금 지원목적과 무관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
-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를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함
- 이중지원 해소 전까지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대출금 수혜 불가
 - ※ 다음 학기 대출 및 장학금 심사 기간까지 이중지원을 해소해야 함

3. 신청기간 : 2024. 10. 14. ~ 10. 2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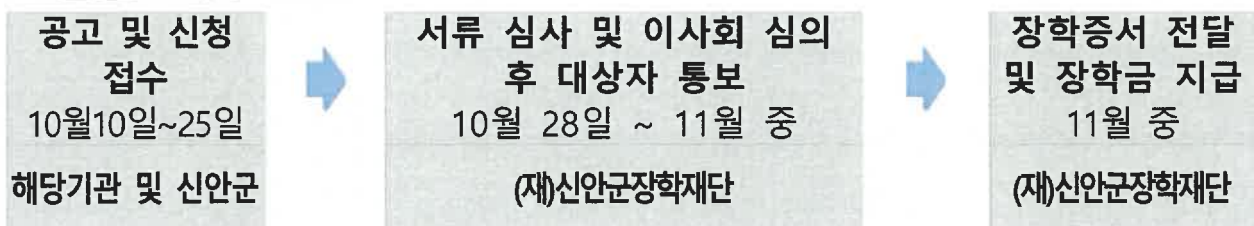
4. 신청장소

- 읍·면사무소 : 우수장학생, 일반(저소득)장학생, 만학도, 다문화가정 장학생, 낙도 학생 장학금,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
- 해당 학교 : 내고장학교진학우수장학생, 만학도장학생, 어가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

5. 선발방법

- 서류심사 후(신청요건, 선정기준 등) 재단 이사회 심의
- 해당 학교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→ 재단 이사회가 적격여부 최종심의

6. 지원절차 및 일정



※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.

7. 기타사항

- 장학생 선발 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(재)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함.
- 인터넷 신청 및 전화접수는 불허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(공지사항) 및新安군청 홈페이지(고시·공고) 선발 세부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(재)신안군장학재단 홈페이지 : <https://www.shinan.go.kr/home/janghak>
 - (재)신안군장학재단 _ 공지사항
 - 新安군청 홈페이지 : www.shinan.go.kr
 - 新安군 대표 누리집 _ 고시·공고
 - (재)신안군장학재단 연락처 : 061)240-8777
 - 주소 : 전남新安군 압해읍 천사로 1004新安군청 교육복지과

8. 구비서류 : **별첨의 구비서류 확인**

2024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구비 서류

| 구 분 | 추 천 자 | 구 비 서 류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|
| 공 통 | | ① 장학금신청서 ② 신청인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 동의서 (본인, 미성년자의 경우 부/모 모두) ④ 주민등록 등본(본인, 부/모 거주확인) ※ 본인과 부·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-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6개월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-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(미혼 : 부·모 명의 발급, 기혼 :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) ⑥ 재학증명서 ⑦ 통장사본(본인 또는 부/모) ⑧ 장학금 신청자 에세이 |
| 우수장학생 | 해 당 없 음 | · 공통(① ~ ⑧) · 추가 : 직전학기 성적증명서(대학 신입생:고교 생활기록부) - 자유학기(학년)제 학교의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점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※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조회를 위한 해당 학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|
| 내고장학교장 우수장학생 | 학 교 장 | · 공통(① ~ ⑧) · 추가 : 관내 초·중학교 졸업증명서, 학교장 추천서(자율서식) · 추가 : 붙임5 신안군 관내 중·고등학교 진학 약정서 |
| 일반(저소득) 장 학 생 | 해 당 없 음 | · 공통(① ~ ⑧) · 추가 :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부/모 모두, 최근 3개월)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|
| 만 학 도 장 학 금 | 학 교 장 | · 공통(① ~ ⑧) · 추가 : 학교생활기록부(출석일수 기입), 학교장 추천(자율서식) |
| 다문화가정 장 학 생 | 해 당 없 음 | · 공통(① ~ ⑧) · 추가 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부/모 모두, 최근 3개월)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|
| 낙 도 학 생 장 학 금 | 해 당 없 음 | · 공통(① ~ ⑧) · 추가 :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부/모 모두, 최근 3개월)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|
| 위 기 가 정 긴 급 지 원 | 읍 · 면 장 | · 공통(① ~ ⑧) · 추가 :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증빙자료 |
| 어가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| 학 교 장 | · 공통(① ~ ⑧) · 추가 : 어업면허증명서, 학교장 추천서(자율서식) ※ 저소득 자녀의 경우 저소득 증빙서류 추가 제출 |

※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증빙서류만 제출

신청인 서약서

본인은 재단법인 신안군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인으로서 본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동안 이중지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지원에 따른 반환금을 반환 할 것을 서약합니다. 또한 이를 위반할 시 3년 동안 장학금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<이중지원의 범위>

| 구분 | 종류 및 반환금 |
|--------------|--|
| 장학금 종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국가장학금 I·II 유형 ■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대통령과학장학생, 대통령드림장학생, 국가장학생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국가연구장학생 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, 사랑드림장학금 등 ■ 정부, 공공기관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, 지자체,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학금 ■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(군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'BK21', 'NURI' 등 정부지원 문제해결인력 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 ■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'학비 지원제도'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|
| 이중지원에 따른 반환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중지원 :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. ■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함. |
| 이중지원의 예외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근로장학금, 멘토링장학금,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 ■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|

2024년 월 일

성명 : _____ (서명 또는 인)

[재]신안군장학재단이사장 귀중

2024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에세이

| | | | |
|----|--|-------|--|
| 성명 | | 학교/학년 | |
|----|--|-------|--|

※ (작성 유의사항) 맑은고딕 12 Point, 줄 간격 160%, 텍스트만 입력/ 필요 시 별도 페이지 작성 제출 가능

1. 나의 꿈과 장학금

2. (10년 후를 예상하며) 장학금과 함께 성장 할 나와 신안군

에세이 복제·전송·책자 발간 등에 이용 동의 여부

- 응모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,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작품에 한해 신안군장학재단이 복제 및 전송, 책자 발간 등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

(동의함 동의하지 않음)

정보주체 성명: (인 또는 서명)

(정보주체가 14세미만인 경우) 법정대리인 성명: (인 또는 서명)